

[별표 4] <신설 2014.7.14>

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

(제22조의2제1항 관련)

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부담금 환급액} = \text{납부 금액} \times \text{요율}(\%) \times (\text{조기 납부 일수}/365\text{일})$$

비고

1. "요율"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
2. "조기 납부 일수"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불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.